



고객 통지문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제동력보조장치 관련 제작 결함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이번 결함 시정 통지로 인하여 고객님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리며, 통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예약 입고 하시어, 시정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우디코리아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제작 결함의 내용

가.	차명 또는 부품명 제작연월일	e-tron 50 qu.: 2020-12-15~2022-03-09, e-tron 55 quattro: 2020-03-13~2023-01-11, e-tron S qu.: 2022-02-08~2022-12-20, e-tron Sportback 50 qu.: 2020-12-11~2022-03-17, e-tron Sportback 55 qu.: 2021-06-02~2023-01-19, e-tron Sportback S qu.: 2022-01-18~2022-11-10, Q8 55 e-tron qu.: 2023-06-13~2023-10-06, Q8 55 e-tron qu. Premium: 2023-10-19~2023-11-15, Q8 Sportback 55 e-tron qu.: 2023-06-09~2023-11-02, Q8 Sportback 55 e-tron qu. Premium: 2023-10-02~2023-12-07, SQ8 Sportback e-tron: 2023-11-07~2023-11-15
나.	형식	GE
다.	결함 장치/부품 사진 또는 이미지	제동력 보조장치(브레이크 서보) 
라.	결함 원인	특정 기간 동안 생산/수입된 일부 차량에 장착된 브레이크 서보 생산 부품 업체의 공정 오류로 인하여, 브레이크 페달의 입력 축과 브레이크 부스터의 작동 축이 사양에 맞게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내용

가.	시정조치 개시일	2026년 5월 6일(수) (관련 규정에 의하여 1년 6개월 이상)
나.	시정조치 방법	점검 및 필요시 브레이크 서보 교체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부서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대표번호: 080-767-2834
라.	시정조치 비용	무상수리(리콜과 관련된 고객님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마.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브레이크 페달 입력 축과 브레이크 부스터 액추에이터 축 사이의 나사 연결부가 제조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여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 연결이 헐거워지는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동 거리가 증가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 비상 제동 기능을 이용한 제동은 항상 가능)

3. 제작 결함 시정 관련 보상 내용

가.	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 하기 전 1년 이내 그 결함을 자체 시정했던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나.	보상 기간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보상 기간 포함
다.	보상신청 접수/ 연락처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 대표번호: 080-767-2834

4. 추가 안내사항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입니다.
나.	리콜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 제기 시 고객센터(080-767-28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아우디코리아는 자사의 자동차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고객님의 차량에 다음과 같은 제작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실시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예약 입고 하시어 시정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은 차종에 따라, 서비스센터에서 안내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아우디코리아가 부담합니다.

본 건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사장

※ 리스 또는 렌트 회사 대상 공지 ※

리스, 렌트 업체가 리콜 차량을 시정하지 않고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경우 그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 시행('20.10.08)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